#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 대상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 2020.10.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및 불응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및 제8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치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불시에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 : http://수원금호리첸시아.com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견본주택 분양 상담전화(☎031-294-1117)를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12.15)**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12.15,)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수원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12.15)** 현재 수원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수원시 권선구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3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시 | 2021.12.20.(월요일) | 2021.12.23(목요일) 16:00시 이후 | 2021.12.24.(금요일)~2021.12.25(토요일)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br>(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청약Home 개별조회<br>(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계약<br>(10:00~18:00) |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견본주택<b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6번지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X | X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분양신고-39호(2021. 12. 15.)로 분양신고필증을 득함.
■ 본 건축물은 수원시 2021-건축과-신축허가-87(2021.11.05.)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권선구 고색2지구 상업·업무용지 B1블록 (고색2지구 B1블록 1로트)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5,452.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비행안전5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없음
- 건축물 연면적 : 83,614.1649㎡(오피스텔 : 75,196.5188㎡)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 2층(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지하 1층(근린생활시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지상 1층 ~ 지상 15층(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15층 8개동 오피스텔 총 513호실
- 주차대수 : 총 614대(오피스텔 525대, 근린생활시설 89대)

■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함
-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 지역구역계수(S) | 지반의 종류 | 중요도계수(IE) | 내진설계범주 | 건물중요도 |
|---|---|---|---|---|
| 0.176 | S4 | 1.2 | D | 중요도(1) |

■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 B1-1블록(1단지)

(단위:㎡)

| 군 | 타 입 | 공급호실(수) |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포함)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 계 | | | |
| 1군 | 84A | 232 | 84.0417 | 24.7410 | 108.7827 | 37.6909 | 146.4736 | 27.7412 |
| | 84B | 229 | 84.3698 | 24.5397 | 108.9095 | 37.8381 | 146.7476 | 27.8496 |
| | 84C | 52 | 84.3057 | 24.2193 | 108.5250 | 37.8092 | 146.3342 | 27.8283 |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계약면적 변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전호실 공용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 타입 | 84A | 84B | 84C |
|---|---|---|---|
|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 공급타입의 구분은 분양광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거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경기도 수원시)은「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수원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우선분양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우선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 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12.15.) 현재 수원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 | 공급호실(수) | 신청유형 호실(수) | | 비 고 |
|---|---|---|---|---|
| | | 거주자 우선공급(20%) | 일반공급 | |
| 1군 | 513 | 102 | 411 | ※ 분양신고일**(2021.12.15.)**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함.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 구 분 | 타 입 | 층 | 공급호실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대지비 | 건물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계약후 10일이내 | 1회(10%) 22.04.25 | 2회(10%) 22.07.25 | 3회(10%) 22.10.24 | 4회(10%) 23.02.24 | 5회(10%) 23.05.24 | 6회(10%) 23.08.24 | 2024.01 (예정) |
| 1군 | 84A | 1 | 12 | 420,732,000 | 293,880,000 | 29,388,000 | 744,000,000 | 20,000,000 | 5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223,200,000 |
| | | 2 | 12 | 435,435,000 | 304,150,000 | 30,415,000 | 770,000,000 | 20,000,000 | 57,000,000 | 77,000,000 | 77,000,000 | 77,000,000 | 77,000,000 | 77,000,000 | 77,000,000 | 231,000,000 |
| | | 3 | 16 | 449,572,500 | 314,025,000 | 31,402,500 | 795,000,000 | 20,000,000 | 5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238,500,000 |
| | | 4 | 16 | 464,275,500 | 324,295,000 | 32,429,500 | 821,000,000 | 20,000,000 | 6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246,300,000 |
| | | 5~9 | 80 | 478,978,500 | 334,565,000 | 33,456,500 | 847,000,000 | 20,000,000 | 6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84,700,000 | 254,100,000 |
| | | 10~15 | 96 | 488,026,500 | 340,885,000 | 34,088,500 | 863,000,000 | 20,000,000 | 6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258,900,000 |
| | 84B | 1 | 9 | 416,773,500 | 291,115,000 | 29,111,500 | 737,000,000 | 20,000,000 | 5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73,700,000 | 221,100,000 |
| | | 2 | 12 | 430,911,000 | 300,990,000 | 30,099,000 | 762,000,000 | 20,000,000 | 56,200,000 | 76,200,000 | 76,200,000 | 76,200,000 | 76,200,000 | 76,200,000 | 76,200,000 | 228,600,000 |
| | | 3 | 16 | 445,048,500 | 310,865,000 | 31,086,500 | 787,000,000 | 20,000,000 | 5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236,100,000 |
| | | 4 | 16 | 459,186,000 | 320,740,000 | 32,074,000 | 812,000,000 | 20,000,000 | 6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243,600,000 |
| | | 5~9 | 80 | 475,020,000 | 331,800,000 | 33,180,000 | 840,000,000 | 20,000,000 | 64,000,000 | 84,000,000 | 84,000,000 | 84,000,000 | 84,000,000 | 84,000,000 | 84,000,000 | 252,000,000 |
| | | 10~15 | 96 | 482,937,000 | 337,330,000 | 33,733,000 | 854,000,000 | 20,000,000 | 6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256,200,000 |
| | 84C | 3 | 4 | 435,435,000 | 304,150,000 | 30,415,000 | 770,000,000 | 20,000,000 | 57,000,000 | 77,000,000 | 77,000,000 | 77,000,000 | 77,000,000 | 77,000,000 | 77,000,000 | 231,000,000 |
| | | 4 | 4 | 454,662,000 | 317,580,000 | 31,758,000 | 804,000,000 | 20,000,000 | 60,400,000 | 80,400,000 | 80,400,000 | 80,400,000 | 80,400,000 | 80,400,000 | 80,400,000 | 241,200,000 |
| | | 5~9 | 20 | 468,799,500 | 327,455,000 | 32,745,500 | 829,000,000 | 20,000,000 | 6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82,900,000 | 248,700,000 |
| | | 10~15 | 24 | 478,413,000 | 334,170,000 | 33,417,000 | 846,000,000 | 20,000,000 | 6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253,800,000 |

**■ 공통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별 면적, 층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호실당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부대시설(관리사무실 등), 주차장, 건축 설비실(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타입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통합방재실, 폐기물보관창고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분배하여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용시설(주차장, 관리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공용면적은 오피스텔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 판매시설 공용면적은 판매시설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 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투기과열대상지구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급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색2지구 B1-1블록(1단지) 입주세대 초,중학생은 기존통학구역 및 중학군인 고색초등학교, 고색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임.(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시기 및 기존세대 학령인구 증감, 경기도교육청 급당기준인원 감소 등에 따라 입주세대 초,중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수원시청 그리고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어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 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상가 및 오피스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20%를 수원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하며, 기타 전국 거주자 대상으로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호실을 공급합니다. (수원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수원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수원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1.12.1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각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당첨자선정 및 타입,동.호수 결정방법 |
|---|---|---|---|---|
| 일 시 | **2021년 12월 20일(월)**<br>**인터넷 청약 (09:00 ~ 17:30)**<br>**(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 **12월 23일(목) 16:00시 이후** | **12월 24일(금)~12월25일(토)**<br>**(10:00~18:00)**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br>신청 군별 **무작위 결정** |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견본주택**<b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6번지**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농협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 안내

| 구 분 | 내 용 |
|---|---|
| 이용안내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KB모바일인증서,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
| 이용방법 및 절차 |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br>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구 분 | 청약신청금 | 내용 |
|---|---|---|
| 모든 타입 공통<br>(84A, 84B, 84C) | 3,000,000원<br>(금삼백만원) |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br>•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농협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br>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농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br>• 청약신청금<br>•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br>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br>-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농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br>•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br>※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br>※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br>※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농협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12.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타입·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일시 | 당첨자 발표 장소 |
|---|---|
| **2021년 12월 23일(목) 16:00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
| **동호실 결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
| **기타사항** |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 |
|---|---|
|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 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br>•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br>•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부정당첨 유의사항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기타 사항 |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br>•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 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구 분 | 환불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은행(창구)청약자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br>•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 기간 | 계약체결 시간 | 장 소 | 계약금 납부 |
|---|---|---|---|
| 2021년 12월 24일(금) ~ 2021년 12월 25일(토) | 10:00~18:00 |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오피스텔 견본주택<b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6)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농협은행 | 317-0024-3104-81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1011001홍길동)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잔여 호실에 대하여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10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람.
- 중도금, 잔금 납부 :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에 이체 및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음(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시행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관리함.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당첨된 동.호수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사항 |
|---|---|
| 본인 계약시 | ①청약신청 접수증(인터넷 청약시 생략가능), ②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③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거주자 우선공급 당첨자의 경우)<br>④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⑤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⑥전자수입인지 |
| 법인 계약시 | ①청약신청 접수증 ②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③법인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등록증 1통 ④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⑤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⑥전자수입인지<br>※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지참<br>※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 제3자 대리 신청시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br>①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 위임용)<br>②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③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12.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이자지급 등의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 해당 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에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확인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입금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는 차입형토지신탁에 의한 시행수탁자로서 분양 수입금을 관리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의 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 구조 및 동·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9-4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등에 의거 수분양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지구는 수원비행장이 인접하여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이 있으며 전파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인지세(가산세포함) 및 제세공과금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2021.01.01.)으로 인지세를 미납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양 계약일 전 수입인지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전 온라인 광고(인터넷상 뉴스, 블로그, 카페등) 및 오프라인 광고(전단, 리플렛, 각종 인쇄물등), 각종 설명회 자료, 이미지, CG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본 분양광고 이후 공식적인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이자후불제)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대출기관 :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금리 및 금융기관 선정 등 대출기관 선정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대출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계약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며,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총 공급금액의 60% 범위 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합니다.(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서 계약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 금융기관에 신청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제시한 대출약정과는 일체 관련이 없음. 또한 중도금 대출가부, 대출금액 및 이자 적용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 본인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 알선에 한해서 진행할 뿐, 알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대출취급수수료 등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및 정부 정책 등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격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잔금 납부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납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미납 시 계약서에 표시된 연체료가 가산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규모는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게 해당 중도금 약정일의 연기 또는 최초 지정한 대출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한 추가 중도금 대출 등의 알선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분양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중도금 납부기일에 납부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금전적 혜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홍보관은 대출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가능여부 또는 대출가능금액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수분양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사실에 대하여 분양상담(유형에 관계없는 모든 유형의 상담을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외국인 또는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Ⅳ 선택품목 안내

■ **무상선택품목에 관한 사항**

| 기본형 | 적용위치 | 타입 | 금액 | 비 고 |
|---|---|---|---|---|
| 타일 | 거실, 복도, 주방<br>(바닥마감) | 84A | 0원 | 미선택시 강마루로 시공됨. |
| | | 84B | 0원 | |
| | | 84C | 0원 | |

- 무상선택품목 선택후 추후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검토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선택 품목( 거실, 복도, 주방 바닥마감 및 가변형 벽체)선택시 추가비용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에 시공에 따른 공사비 차액 또한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무상선택품목과 무상 제공되는 가전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도산,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타제품(타사)이나 색상을 변경 또는 미설치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선택품목 미선택시 기본형으로 자동 선택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무상제공품목에 관한 사항

| 품목 | 적용실 | 주택형 |
|---|---|---|
| 에어브러쉬, 에어샤워기 | 현관 | 84A, 84B, 84C |
| FCU냉방기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84A, 84B, 84C |
|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인덕션2, 가스1) | 주방 | 84A, 84B, 84C |
| 붙박이장 | 침실3 | 84A, 84B, 84C |

## V 기타 계약자안내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대상지역(수원시 고색지구)에 위치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 (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전매 요건은 향후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 2호에 의해 사용승인전 분양을 받은자는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1개월(10일~30일 사이)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우편 또는 이메일, SMS 등으로 할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점검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인피니플러스㈜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인피니플러스㈜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차입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분양광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인피니플러스㈜,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금호건설(주)간에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인피니플러스㈜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또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인피니플러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인피니플러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인피니플러스㈜가 부담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VI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①항 3호 의거,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
  면적에 가산합니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의거, 분양광고일(2021.12.15.)에 일간신문(문화일보)을 통해 분양광고문이 게재되며, 상세한 사항은 본 분양광고문과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오피스텔 3개 타입의 평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라인에 따라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

- 공급 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호실에 대한 호실구획(호실 및 면적조정) 및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고, 각각의 반올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할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당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대상 토지로서, 관계법령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경계 및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준공 시 정산 처리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 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지상으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으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기둥, 보 등)의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전매(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함)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제한 기간은 분양 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단,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 한때에는 사용 승인 후 1년까지)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 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자전거 거치대, 드라이에어리어(DA), 재활용폐기물보관소, 냉각탑, 탈취유니트,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및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에 표현된 입면은 실시공 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관계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 및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오피스텔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실내 무단출입 및 실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외부 벽면에 설치되는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최초 분양광고 전 배포된 홍보물 또는 사업주체에서 배포하지 않은 홍보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관련**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연돌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문닫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PIT, 휀룸, 급배기구 및 쓰레기 집하장으로 인해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시설 및 대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 및 입점자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개별 호실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은 현장의 실제 여건상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전기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설계변경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차량 출입구 및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은 특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건물 명칭 및 상가간판,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주차는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과 주차공간을 구획하여 영역을 사용하며,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 구분을 위한 주차 차단기 등의 추가설치를 포함한 주차장의 사용방법은 추후 관리 주체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형태,수량 등은 심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건물 특성상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호실은 이삿짐 사다리차가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항공장애 표시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침해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건축물로써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오피스텔 입주자의 일방적 제한조치가 불가하며 상호간 협의·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동 하부에는 DA(Dry Area), PD(Pipe Duct), PIT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건물 기능을 위한 설비공간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이동 및 제거를 요구할 수 없고 추후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계획된 우수조는 일부 조경용수로 사용합니다.
- 당 사업부지 내에는 입주자 및 외부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출입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휀스 등의 차단구조물을 임의로 설치 할 수 없습니다.(인허가 관청 관리대상)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 주차장 썬큰)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시설물(가로등, 가로수, 경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공개공지 등), 배치구조(부대편의시설, 관리시설),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식재 및 시설물 설치구역, 휴게소)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세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비상차도, 보도 등)의 경사도는 추후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인접 외부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급배기, 환기휀,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눈부심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실의 전/측면,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실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임의로 재조정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등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지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홍보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또는 이상으로 시공됨).
- 고색2지구 B1-1블록과 B1-2블럭 사이에는 3.5m의 공공보행통로가 있으며, 공공보행통로는 블록별 입주민 상호간 협의하여 공동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호간 통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 B1-1블록 서측 전면공지(약 L=134m 중 일부)에 설치되는 보행공간에 공공시설물(도로교통시설 등)이 시공 될수 있으며, 관청이 공공시설물 설치로 지상권 설정을 요청 할 경우 입주민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84B타입의 경우 침실3의 측벽에 101동~ 104동 1호라인과 105동~108동 1호, 4호라인에는 창호가 설치되며, 101동~104동 4호라인은 창호가 미설치됨.

**■ 공동설비 및 시스템**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설치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옥상층에 제연휀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욕실은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장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는 실외기 공간이 존재하며, 일부 근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시선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휀룸 , 실외기실 ,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그 외 시설(근린생활시설)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실별 위치, 면적, 사용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지역난방을 이용한 중앙공급식 바닥난방 방식이며 욕조 및 가구 하부는 바닥난방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 냉방은 지역난방을 이용한 중앙공급식 냉방으로 천장형 팬코일 유니트가 설치되며 별도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는 개별적인 냉난방장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실외기실은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와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내 천장 내에 기계식 환기 장치 및 환기구가 설치되고 천장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기계식 환기 장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 및 외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각종 설비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천정내부에 상부호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조건 및 사용자의 이용에 따라 일부 호실에서 창호 등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내측에 설치된 세탁실 등에는 내부 온·습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내 가스정압기, 한전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홀에는 상시개방형 갑종방화문(도어릴리즈 설치)이 설치되고,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한 설치시설로 이에 대해 위치이동,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됩니다.
- 단위 호실의 온수분배기는 호실 내 씽크장 하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난방·급탕을 위한 세대용 열교환기가 신발장 또는 싱크장 하부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배관에 대한 상세 설계가 현장 여건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윗 세대의 급수급탕분배기 및 오배수 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크 월패드, 주방TV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국선전화 신청 및 비용은 입주자 부담.)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인근 호실에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의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설계관련**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Ⅶ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039(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 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일부 실내 기둥이 위치할 수 있으며, 층고 및 천장고는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관련 도면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호실 및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호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안내된 것과 반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별 현관문 등 스틸도어, 점검도어, 핸드레일, 유리 등은 본 공사시 제조사, 유리, 하드웨어, 프레임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방재실, 우편함, 재활용폐기물보관소 등)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는 냉각탑 등 설비 장비가 설치되며 각각 상·하부층에 인접한 호실는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불법 구조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배관,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역냉난방 설계 적용으로 냉방설비는 열교환기에 의해 공급되고, 냉방설비는 천장형 팬코일 유니트로 관리주체 운영원칙에 따라 개별제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공급설비의 용량제한으로 실내 냉난방 기기의 용량 증대, 교체 및 증설은 불가합니다.

- 각 실의 전기는 기본 용량만 공급하며, 입주 후 전기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관할 지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벽체 위치 및 문(출입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발전기실은 오피스텔과 구분되어 근린생활시설이 통합 설치됩니다.
- 각 시설별 방재실, MDF실은 통합해서 사용하나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설치되는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 간벽을 제외한 내부 벽체의 일부는 경량벽체로 시공 되어지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는 시공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진출입구, 재활용폐기물보관소,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단지 내 옥외소화전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는 관할 소방서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층고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등의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주차장 진출입구에 별도 구획표기를 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호실 및 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펜스 설치 및 변경, 제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조경, 조경시설물 및 사업지내 보행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 주변에 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급수, 난방, 냉방은 중앙공급 방식이며, 장비운영을 위한 기본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급탕은 별도 공급이 안되며, 난방수를 세대 내 열교환기를 통하여 급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배기휀 등 공용 기기의 유지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 옥상층과 건물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경우 주간이나 야간에 눈부심이나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항공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기의 부지내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이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가스정압기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오피스텔 주출입구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외부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의거 단지 내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건축물의 관리단이 형성되어 관리를 개시하는 시점까지 분양(공급)계약시 제공받은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본 건축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우수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입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실내조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부에는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의 마감사양, 시설 및 조경 등과 본 건축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시설, 조경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공시 호실별 옵션 선택에 따라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사양,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오피스텔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실내 일부 실 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지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조경석, 각종 인쇄물 등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계선에 인접한 건물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이전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홍보관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부지 내에는 입주자 및 외부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한 조경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 및 기초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구조개선을 위해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자전거 거치대,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상가, 관리시설, 놀이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카달로그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호실은 근린생활시설이 접해있어 방범에 취약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외부상세계획,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관청과 협의(자문) 과정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 담장 설치여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간 거리로 인해 각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환기 불리,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 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호실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와 인접한 저층 및 일부 호실은 소음, 매연, 먼지 등의 환경오염,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 구조형식 등이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의 이동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호실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층 및 고층 호실의 경우 이사짐 운반을 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의 진입 유효 높이는 2.7m 기준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상은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비상차량(소방차, 이삿짐차량 등)외 진입 및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 각 호실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홍보자료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일부 호실은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이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옥탑부, 주동 형태, 창호 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저층 석재색상,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주변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나,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따라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하부 PIT높이, 비내력벽의 구조 및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 난간이나 구조물의 마감,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와 오피스텔 일부 호실 내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일부 환기창이 설치될 수 있으나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설치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호실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구간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권과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 및 지하층에는 냉각탑 및 설비장비(휀 등)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냉각탑 및 설비 장비 설치 하부 및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진동, 소음, 연무 및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각 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설치되는 주방배기 설비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열기 및 배기구에 따른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D.A 공간은 구역별 급배기를 위한 설비 통로공간으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출입구 인근 지하 주차장 D.A 타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주방 탈취설비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해충,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놀이터, 기계설비(급배기팬, 급배기구, 실외기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배선위치 및 오·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오·배수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실에 화재 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지하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함을 사전에 인지 하셔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본 건물 부지 일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공고지역(지역난방 의무사용 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각 오피스텔별 냉방설비(팬코일 유니트)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오피스텔별 냉난방 사용요금은 각 오피스텔별 개별 계량기(냉방, 난방용)에 의하여 부과 됩니다.
- 지상1층에는 Dry Area(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시설, 맨홀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에는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인접 호실에서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에 설치되 있는 팬코일유니트 냉방설비는 냉방전용이며 관리주체의 운영원칙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냉방 공급 시 세대내에서는 각 방 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 자료나 이미지 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입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호실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호실에서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회의실 등의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진입동선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며, 주차장 진출입 및 이용 동선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의 주차 구획은 각 동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주차대수가 일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호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진출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부담은 추후 입주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단위세대 관련**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실 내 설치되는 내/외부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에 설치되는 현관, 창고, 발코니 연결 창호 및 점검구 등의 도어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실제 시공시 브랜드, 재료,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호실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자재(타일, 엔지니어스톤 등)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홍보관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현관 바닥, 욕실 타일 등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현관 디딤판에 시공줄눈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타일, 도장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내 환기설비가 천장 내부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내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및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본 공사시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실 상부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냉난방은 지역냉난방 열원을 이용하며, 냉방시설은 실내 천장 카셋트형 팬코일 유니트가 설치되고 설치위치, 수량 등은 타입별, 호실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실 천장 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기기는 견본주택용 기기로 본 공사시에는 냉방전용기기(팬코일유니트)로 설치되어지며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난방은 지역난방이 공급 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에는 주방후드 상부장내 주방용 자동식 소화 설비가 공급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 내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은 비 난방구역으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 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층의 공유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항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 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
  각종 광고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조성계획(의료시설 및 의료지원시설, 판매시설등)은 각 시행주체의 계획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합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견본주택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시, 설치된 시설의 색상 및 크기, 형태, 작동방법은 실 착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또는 홍보관에 설치된 각종 사인물, 가구, 가전제품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디스플레이(전시용품)용으로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및 형태, 외벽 마감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상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부대복리시설, 자전거 거치대, 포장, 주변환경, 제연휀룸 및 휀룸용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고저차,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와 출입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CG(조감도, 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또는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문, 도어 및 점검구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호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V.A.T 별도]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정보통신·소방 감리 |
|---|---|---|---|
| 회사명 | ㈜건축사사무소 휴이언플러스 / ㈜코담기술단 | | |
| 감리금액 | ₩3,290,000,000 | | |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34231 / 215-86-86225 |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 구 분 |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시행 수탁사 | 한국자산신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706-1)<br>카이트타워 | 110111-2196304 |
| 시행 위탁사 | 인피니플러스(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94, 2층 | 110111-5512763 |
| 시공사 | 금호건설(주)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 110111-0134877 |
| 분양대행사 | (주)니소스씨앤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br>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 110111-2736142 |
| 감리사1 | (주)건축사사무소휴이언플러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94,201호 | 110111-2779316 |
| 감리사2 | (주)코담기술단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7길 8,302(방이동,중앙빌딩) | 110111-3475690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706-1) 카이트타워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차입형토지신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비행안전5구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용도·규모

① 소재지 : 경기도 권선구 고색2지구 상업·업무용지 B1블록 (고색2지구 B1블록 1로트)
② 용도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③ 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533-6 번지

| 견본주택 위치 | 관련사항 |
|---|---|
| |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533-6 번지<br>• 전　　화 : 031-294-1117<br>•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00 ~ 18:00<br>• 홈페이지 운영안내 : http://수원금호리첸시아.com<br>**※ 본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임)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